

#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 ~ 2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4. 4. 30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○ 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여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투자유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위촉내용을 신설함(안 제3조제3항)

○ (현행) 위원장 1명 : 군수

⇒ (변경) 위원장 2명 : 군수, 민간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

나. 위원 중 의회의원 위촉 내용 삭제함(안 제3조제4항)

○ 「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」 제13조 관련하여 위원 중 군의원 위촉내용 삭제

다. 상위법 개정조문 및 중앙조직개편 내용 반영함

○ 지식경제부장관 ⇒ 산업통상부장관, 노동부령 ⇒ 고용노동부령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
○ 「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4. 3. 24. ~ 4. 13.

(나) 예고결과 :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(6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7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5호”을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6호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 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군수가 되며,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”을 “군수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,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·제19조제3항·제20조의2 중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노동부령”을 “고용노동부령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2항제2호 중 “영 제2조제7항제2호”를 “영 제2조제8항제2호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”이란 「<u>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</u>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6. ~ 10. (생략)</p> <p>11. “물류시설”이란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「<u>유통산업발전법</u>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12. ~ 1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「<u>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</u>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8항----- -----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 「<u>유통산업발전법</u>」 제2조제16호----- -----</p> <p>12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<u>위원장</u>을 포함한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<u>군수가</u> 되며, 위원은 <u>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</u>,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, 법조계, 학계,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<u>위원장 2명</u>----- -----</p> <p>④ -----<u>군수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</u> 하며, 위원은 <u>군 소속 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.</p> <p>1.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「<u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</u>」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</p>	<p>제8조(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「<u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</u>」 제116조의2제1항----- -----</p>



